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8. 11 선고 2022가단1361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혁준

변 론 종 결 2023. 7. 14.

판 결 선 고 2023. 8. 1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. 28. 체결된 1,7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유한회사(이하 'D'라 한다)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(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47257)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4. 1. 17. 'C는 D에게 19,677,341원 및 그 중 5,998,800원에 대하여 2013. 12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4. 2. 8. 확정되었다.

나. D는 2016. 11. 4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을 양도하였고, 2021. 11. 17.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. 원고는 2021. 12. 7. D의 승계인으로서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.

다. C는 2021. 1. 28. 배우자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1,700,000원을 입금(이하 '이 사건 입금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7, 8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가. 피보전채권의 존부

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입금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무자력 여부

1) 제1항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E기관에 대한

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는 이 사건 입금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가 F, G, H에 대하여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8나10938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가 위 소송에서 2010. 1. 14. 'C에게, F는

75,000,000원, G는 78,000,000원, H은 79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이 2012. 7. 26.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C가 이 사건 입금 당시 F, G,

H에 대한 위 판결상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의 위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

- 1) C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- 2) 피고는 이 사건 입금행위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사해의사는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한바, C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1,700,000원을 증여한 이상 그 명목이 생활비라고 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, 피고도 배우자로서 C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,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.

3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입금행위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우진